

범죄자의 인권 존중

소방안전학부 202211774 백주현

1. 서론: (문제 상황 사례 탐색)

헌재는 24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법 조항 자체는 위헌이나,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인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ㄱ씨는 12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아동을 성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돼 이듬해 6월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확정 받았다. 이후 ㄱ씨는 같은 해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격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범죄 종류와 죄질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아동 성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높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더라도,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관련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도 피해 아동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공무 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¹⁾

위의 뉴스 보도처럼 많은 사람들은 범죄자의 인권 존중에 대한 문제로 많이 대답한다. 중범죄자가 출소하거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항상 등장한다.

나는 이와 같은 문제,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 글을 써보려 한다.

1) 강재구 기자,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한겨레>, 2022.11.24. 수정, 2022.11.27. 방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8745.html

2. 본론1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기 전에 우선 우리는 교도소에서 수감자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교도소는 말 그대로 범죄자를 교도 즉, 교정 및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므로,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고통을 부과하기 위한 시설이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도소는 범죄인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작용과 더불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육이나 처우 등을 행하고 있다.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의 경우에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학교 입학 자격, 고등학교 입학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격 등의 검정고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 방송 통신 대학 과정, 독학사 및 정보화와 외국어 교육과정도 설치·운영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사회복귀에 유용하게 할 취지로 각종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징역형 수형자의 경우에는 작업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작업에 있어서는 교도소 내에서 하는 작업과 교도소 이외의 사회 각 산업체 등에서 통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야간에 잠만 교도소에서 자고, 평일의 작업시간에는 외부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전화 통화, 사회 견학, 귀휴, 가족 만남의 집(교도관의 감시 없이 교도소 외에서 가족 등과 함께 숙식을 해결하는 시설) 등이 있는데, 이러한 처우는 궁극적으로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위한 방법이다.²⁾

이처럼 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는 사람은 교도소에서 건전한 사회인이 되려 교육을 받고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있어야 할 징역을 다 수행하면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국민들과 같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러도 수감생활을 모두 마친 수감자가 사회생활에 들어와 죄를 뉘우치고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범죄자는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여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반성할 기회를 잃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 [출처] 矯導所, 범죄자의 인권/작성자 지선,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교도소(矯導所))

형집행법개요(刑執行法概要)(원형식·윤상로, 진원사, 2009)

형사정책(刑事政策)(박상기·손동권·이순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교정학개론(矯正學概論)(남상철, 법문사, 2005)

교정학개론(矯正學概論)(이윤호, 박영사, 2003)

행형학(行刑學)(배종대·정승환, 흥문사, 2002)

3. 본론2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하는 두 번째 큰 이유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범죄자의 가족을 쉽게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즉,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범죄자의 가족 또한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주변 여러 명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 그렇기에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죄 없는 범죄자 가족까지 피해자, 국민의 타겟이 되면 안되어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더 신경쓸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의 가족 중 한 명이 중범죄를 저질러 국민들이 분노하여 범죄자 신상정보공개를 원하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할 때,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범죄자의 가족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다.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생기고 두려움을 떠나는 것, 이것이 범죄자의 가족에게도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마냥 중범죄자여서 사회에 악을 끼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인권을 존중해주면 안된다는 의견은 성립될 수 없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성폭력사건의 재발방지와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아버지에 의한 사건의 경우 공개되는 순간 피해자가 그대로 노출돼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4. 가능한 반론 (추후 작성)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때 출소하기 전부터 뉴스에 보도되고 나라가 들썩했었다. 이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조두순 범죄자의 인권 존중(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오갔다.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 조두순과 함께 감방에서 생활을 한 A씨의 국민일보와 인터뷰에 따르면 조두순에게 “범행을 반성하느냐”고 물었으나 “술에 취해 기억도 안나고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³⁾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자발찌도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악랄한 살인마 강윤성이 신상 공개 되었다. ⁴⁾

위 기사들처럼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감량을 다 완료하고도 범죄를 또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도 인권도 존중해주어야 하는가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인간으로써 태어난 이상 인간은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여도 그 범죄자에게 똑같이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된다..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범죄자에게 더 엄격한 형벌을 주거나 전자발찌 외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황정은, “응징하겠다”...조두순 출소일, 몸 만들기 열중하는 이유는? <제민일보>, 2020.11.26. 수정, 2022.11.27. 방문,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161>

4) 조각창, 전자발찌 그놈, 강윤성, 범죄자만 위한 인권 문제있다.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2021.9.2. 수정, 2022.11.27. 방문, <https://impossibleproject.tistory.com/6034>

5. 결론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인데 범죄자라는 이유로 그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위에 말했듯이, 중범죄자나 위험한 범죄자는 인권 침해 방식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더 심한 형벌이나 긴 수감생활 등 다른 방법으로 범죄자가 다시 그러한 짓을 하지 않게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해를 입히는 범죄자에게 분노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결코 인권 침해가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범죄자의 인권은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